

●●● 미국 ●●●

얼음제조기 회사간 기업결합 조건부허가



연방법무부는 The Manitowoc Company Inc.(이하 'Manitowoc')와 Enodis plc(이하 'Enodis') 간의 기업결합에서, Enodis의 미국내 전체 사업부문을 매각하기로 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합의는 27억 달러 규모의 Enodis를 Manitowoc가 인수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원래 연방법무부는 이번 기업결합 신고 건에 대해 미국 내 상업용 얼음제조기의 개발·생산·유통 및 판매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어 가격이 인상되고 품질과 혁신이 감소될 것이라고 보았다. Thomas O. Barnett 독점금지국장은 "원래 신고됐던 기업결합은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연방법무부가 요구한 자산매각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 내 상업용 얼음제조기 구매자들은 가격 인상 및 품질과 혁신의 저하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은 이런 기업결합을 막기 위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화해안도 함께 제출했다.

법원이 화해안을 승인할 경우, 이번 기업결합과 관련된 소송은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Manitowoc과 Enodis는 미국 내에서 상업용 얼음을 생산하는 3개의 회사들 중 일부로, Manitowoc 기기들은 Manitowoc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으며, Enodis 기기들은 Scotsman과 Ice-O-Matic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다.

이런 상업용 얼음제조기들은 레스토랑, 편의점, 호

텔 과 기타 대량의 얼음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들에서 필요한 기기다.

한편, 화해안에 따르는 경우 Manitowoc과 Enodis는 Enodis의 미국내 모든 사업부문을 매각해야 하며, 여기에는 Scotsman과 Ice-O-Matic 브랜드를 포함해 얼음제조기의 개발, 생산, 유통 및 판매부문이 모두 포함된다.

이번 사건 조사의 전 과정에서 EU위원회의 협조가 있었으며, EU위원회의 협조 결과 독점금지국은 Enodis의 미국내 모든 얼음제조기 사업부문을 매각하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독점금지국장은 "EU위원회와의 이번 협조는 글로벌 경쟁 집행을 위한 효과적인 협력이었다"고 평가했다.

Manitowoc은 위스콘신주 Manitowoc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상업용 얼음제조기 및 관련 장비, 냉장 시설 장비, 크레인, 선박 등의 제조업자이다.

2007년 총매출액은 약 40억 달러로, 이 중 미국에서 상업용 얼음제조기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금액은 약 1억5,200만 달러이다.

또한 Enodis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얼음제조기 및 관련 장비사업을 비롯해 요리용 장비나 저장 시설 등을 판매하고 있다.

2007년 이윤은 16억 달러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 중 미국에서 얼음제조기 판매를 통해 약 1억5,3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2008년 10월 6일, 연방법무부)

●●●● 미국 ●●●●

해운업자들, 담합행위 유죄 인정 · 징역형 합의



미 국 해운회사 대표들이 자신들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연방법무부가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과 푸에르토리코간 해로를 통한 운송업을 영위하면서 입찰담합, 가격고정 및 시장분할 등 다양한 공모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법무부는 또 5개 사업자 대표들이 자신들의 공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물증을 없애버린 것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은 플로리다주 잭슨빌 연방 지방법원에 이들을 기소했으며, 독점금지국장들은 "미국법을 위반해 미국 내에서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친 사업자들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소를 통해 잭슨빌과 푸에르토리코 등지에 거주하고 있는 4명의 해운업자들은 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지는 대로 징역형을 받기로 합의했다.

또한 2만 달러의 형사벌금도 물기로 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법원에서 결정이 나는 대로 집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기소된 5개 사업자들은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간에 상품을 운송하는 해상운송사업자들로, 이 회사들은 소비자부터 중장비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항구(푸에르토리코와 같이 미국 영토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을 포함) 간에 거래되는 화물은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에 선적되어야 하고, 미국 국기를 게양한 상태로 운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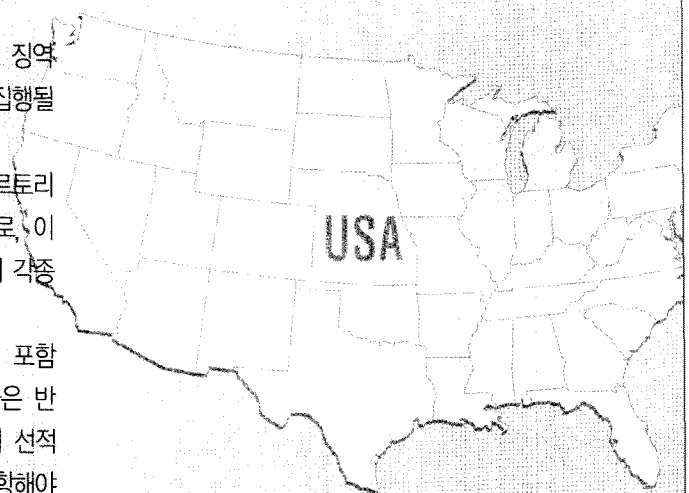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간의 화물운송서비스 매출액은 매년 수억 달러에 이르는데,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사이의 화물운송방법 중 해상운송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4개 사업자들은 적어도 지난 2002년 5월부터 2008년 현재까지 부당한 공동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미국과 푸에르토리코간 항로에서 화물운송요금 인상, 정부나 구매자의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 운임을 고정 등의 경쟁제한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독점금지국 형사집행부와 FBI 잭슨빌 지사에서 주도했다.

(2008년 10월 1일, 연방법무부)



사무자동화설비 사업자간 기업결합 승인 & 바나나 수입업자들에게 과징금 부과



EU위원회는 EU기업결합 규칙에 따라 신고된 일본회사인 Ricoh의 미국회사인 IKON에 대한 기업결합 계획을 승인했다.

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이 유럽 역내와 그 일부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지 않을 것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

Ricoh는 복사기, 팩스기, 프린터 등과 이와 관련된 소모품과 서비스를 등을 포함한 각종 사무자동화설비의 생산 및 유통사업을 하는 회사로, 첨단 전자제품과 디지털 카메라 등도 생산하고 있다.

IKON은 뉴욕주시장에 상장된 회사로, 복사기와 프린터 등과 같은 사무자동화기기를 포함한 문서관리시스템 유통회사이다.

이와 함께 문서관리 소프트웨어와 관련 서비스 및 금융 지원사업 등도 영위하고 있다.

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이번에 신고된 기업결합은 사무자동화설비의 도매유통부분과 흑백복사기 생산에서 약간의 중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중복현상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기업결합 후에도 여전히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경쟁사업자들이 그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됐으며, 소비자들 역시 계속해서 사무자동화설비를 구입하는데 광범위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또 복사기의 도매유통시장도 경쟁적인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위원회는 Ricoh와 IKON 간의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결론 내렸다.

(2008년 10월 24일, EU위원회)

EU위원회는 바나나 수입업자인 Chiquita, Dole와 Weichert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카르텔과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EU경쟁법을 위반해 Dole와 Weichert에 6,03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카르텔 참가자들은 EU 8개 회원국들에서 자사의 바나나 가격을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Weichert는 담합행위를 하면서 주로 'Del Monte'라는 브랜드를 이용해 거래했다.

반면 Chiquita는 위원회의 조사 개시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과징금을 면제 받았다.

Dole와 Weichert는 법위반 행위 당시 바나나시장에 특수한 규제가 존재했었다는 사유를 포함해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60%까지 경감 받았으며, 해당 카르텔 사건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참가하지 않은 Weichert는 10%를 추가로 경감 받았다.

이 카르텔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및 스웨덴 등 바나나 소매시장에 영향을 미쳤으며, 2002년 매출규모는 약 25억 유로에 이른다.

유럽에서는 매년 많은 양의 바나나를 소비하는데, 위 8개 회원국들의 경우 약 160만 톤을 소비했으며, 이는 소매가격으로 약 25억 유로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지난 2002년에 Chiquita에 대해 책임감 면고시를 적용해 책임을 면제해 준 이래, 2005년 4월 바나나시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바나나 수입업자들에게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2008. 10. 15. EU위원회)

●●● E U ●●●

Metro그룹에 Haniel 단독지배 승인 & DT의 그리스 통신사 인수 승인



EU위원회는 EU기업결합 규칙에 따라 독일계 회사인 Haniel이 역시 같은 독일계 소매그룹인 Metro를 단독으로 지배하겠다는 계획을 승인했다. Haniel은 이미 Metro의 대주주이며, Schmidt-Ruthenbeck라는 회사와 함께 Haniel을 공동지배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이 유럽 역내와 그 일부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지 않을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Haniel은 가족경영회사로, 철강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거래, 건축자재 생산 및 의약품, 직물 및 화장실 청결제 등의 소매업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Metro는 상점회사로,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대형 소매상 및 대형 전자제품 매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Schmidt-Ruthenbeck 역시 가족경영회사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홀리데이호텔을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 시스템 분야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Haniel과 Metro 두 회사는 전문 의류분야에서 사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물 및 화장실용 청결제 분야에서도 수직적으로 약간의 관련성이 인정됐다.

그러나 해당 시장들에서의 점유율이 적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쟁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이번에 신고된 기업결합이 경쟁 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2008년 10월 15일, EU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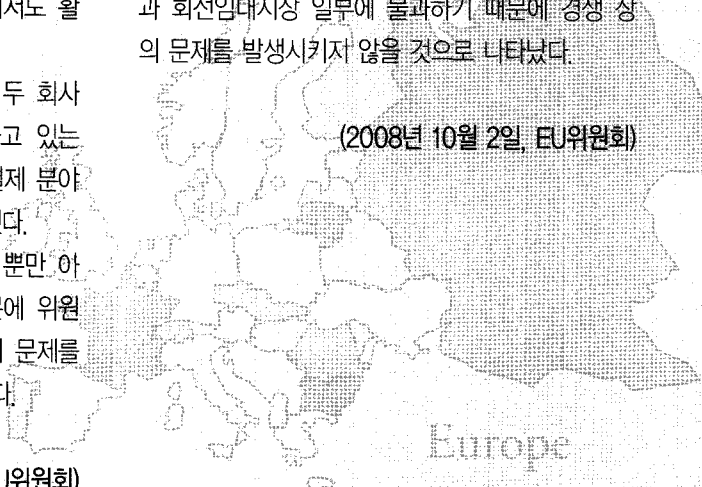
EU위원회는 EU기업결합 규칙에 따라 신고된 독일 기간통신사업자인 도이치텔레콤(이하 'DT')의 그리스 통신사인 OTE에 대한 기업결합 계획을 승인했다.

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이 유럽 역내와 그 일부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지 않을 것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

DT는 종합통신 및 정보기술서비스 제공사업자로,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몇몇 EU 회원국에는 유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OTE는 그리스와 루마니아에서 자회사인 Cosmote를 통해 유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불가리아, 그리스, 루마니아에서는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신고된 기업결합에 대한 위원회 검토 결과, DT와 OTE의 네트워크가 상호보완적이며, 이들의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는 루마니아의 유선소매시장과 회선임대시장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쟁 상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0월 2일, EU위원회)



●●● 독일 ●●●

연방카르텔청, 가스사업자들과 조사 중단 합의 & 경쟁전문가들, 경쟁법상 구매력 논의



E. ON 그룹이 대주주로서 지배하고 있는 6개 지역 가스공급업자들은 연방카르텔청과 자신들의 이익 중 일부를 소비자들에게 환원키로 하는 (재정적) 약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약정에는 다가올 동절기에 있을 가스요금 인상 시기를 10월에서 12월로 연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11월달 난방비 영수증을 지급하는 소비자는 평균 35유로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직접적인 편익을 제공 받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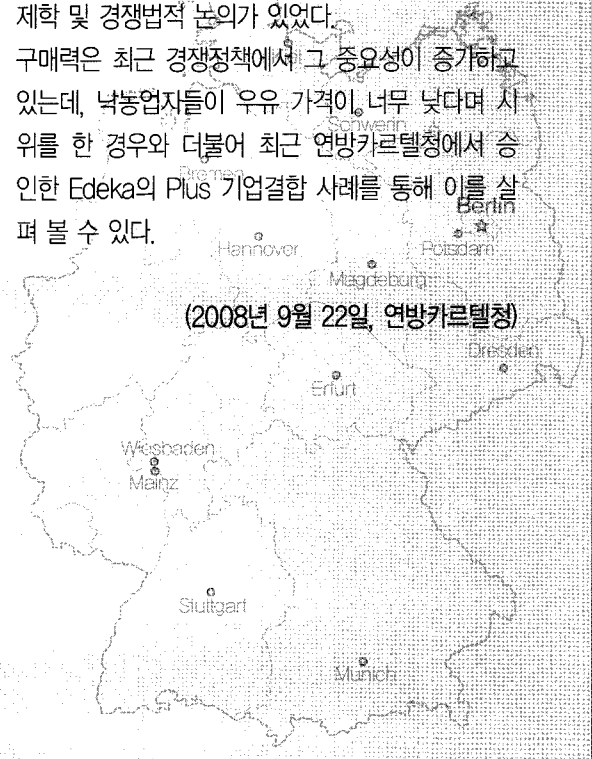
이런 조치들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로 연방카르텔청은 이 지역 가스공급자들에 대한 조사를 중단키로 했으며, 조사가 중단되는 가스공급업자들은 E.ON Hanse, E.ON Avacon, E.ON Mitte, E.ON edis, E.ON Thüringer Energie 및 E.ON Bayern 등이다. 지난 3월 연방카르텔청은 35개 지역 가스공급업자들을 상대로 이들이 가정용과 소규모 상업용 가스 요금을 과도하게 받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는 연방카르텔청의 2007~2008년 정책에 따른 것이었으며, 특히 에너지사업자들의 지위남용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개정 경쟁제한방지법 제29조에 의거한 것이었다.

연방카르텔청은 2007년과 2008년의 요금을 비교한 결과, 지역 가스공급업자들의 남용행위가 우려되어 조사를 진행하게 됐으며, 조사 결과 사업자들의 이윤 취득이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연방카르텔청과 E.ON은 이 문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나긴 법적 분쟁 절차를 피하기 위해 합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008년 10월 6일, 연방카르텔청)

연 방카르텔청 경쟁법 워킹그룹의 주관으로 2008년 10월 18일 '경쟁법상 구매력 -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본에서 열렸다. 경쟁법 워킹그룹은 경쟁법의 기본 이슈들에 대해 매년 한 차례의 토론회를 갖고 있는데, 이번 토론회는 경제학 및 법학 교수들을 비롯해 뒤셀도르프 고등법원과 연방대법원 경쟁법 전담판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경쟁정책 관념(구조기반 접근법 또는 효율기반 접근법) 및 기업결합(Edeka/Tengelmann 사례)과 지위남용 규제에 있어서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경제학 및 경쟁법적 논의가 있었다.

구매력은 최근 경쟁정책에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낙농업자들이 우유 가격이 너무 낮다며 시위를 한 경우와 더불어 최근 연방카르텔청에서 승인한 Edeka의 Plus 기업결합 사례를 통해 이를 살펴 볼 수 있다.



“●●●● 일본 ●●●●”

하청대금감액금지 위반한 유닛에 권고



공정취인위원회는 유닛 주식회사(이하 '유닛')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청대금 지불 지연등 방지법(이하 '하청법') 제4조 제1항 3호(하청대금 감액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동법 제7조 제2항 규정에 근거해서 권고했다고 밝혔다.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닛은 간판, 표지 등의 제조사업 및 실크스크린 프로세스 인쇄에 의한 간판, 표지 등의 인쇄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활동을 하면서 이용하는 데이터인 정보 성과물 작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청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유닛은 하청사업자의 책임으로 볼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청사업자에게 '할인'이라고 칭하면서 하청대금 액수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유닛은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이런 요구에 응한 하청사업자에게 그들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해야 할 하청대금 액수를 감액하고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권고를 실시했다.

- ①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할인'이라고 칭하면서 하청대금에서 감소시킨 금액(총액 4,155만1,505엔)을 하청사업자(37명)에게 신속하게 지불할 것
- ② 이런 감액행위는 하청법 규정에 위반된다는 취

지 및 향후 하청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는 하청대금 액수를 줄이지 않겠다는 취지를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

- ③ 향후 하청사업자의 책임 없이 하청대금 액수를 줄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사의 발주 담당자에게 하청법 연수를 실시하는 등 사내 체제의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그 내용 등을 자사의 임원 및 종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킬 것
- ④ 위 내용들을 거래처 하청사업자에게 알릴 것

(2008년 10월 29일, 공정취인위원회)



경품표시법 위반한 큐슈전력에 배제명령



공정취인위원회는 큐슈전력 주식회사(이하 '큐슈전력')가 공급하는 '전화(電化) de나이트'라는 전기요금(이하 '전화 de나이트')을 적용하는 거래와 관련된 표시를 조사한 결과, 경품표시법 제4조 제1항 2호(유리 오인)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동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배제명령을 내렸다.

전화 de나이트란, 전기사업법 제19조 제7항에 근거하는 선택 약관에 규정된 계절별·시간대별 전기요금으로, 울전화주택 전용으로 야간 이용요금을 저렴하게 설정한 전기요금을 말한다.

큐슈전력은 전화 de나이트를 적용해 전기를 일반 소비자에 공급하면서 2007년 10월 무렵부터 2008년 8월 무렵까지, 팜플렛에 삽입한 리플릿을 통해 표시를 하고 있었다.

표시내용을 보면, 마치 급탕설비 및 조리기구에 가스를 이용하는 주택과 비교해 '울전화주택'이라는 모든 에너지원을 전기로 조달하는 주택(이하 '울전화주택')이 연간 최대 약 10만엔 이득을 보는 것처럼 표시했다.

이와 함께 울전화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 '울전화주택용자'라는 용자제도에 의해 용자를 받는 경우는, 울전화주택을 통해 30년간에 약 350만엔의 이득을, 또 이 용자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울전화주택을 통해 30년간 약 300만엔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울전화주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에코 큐트'라는 자연냉매 히트펌프식 전기급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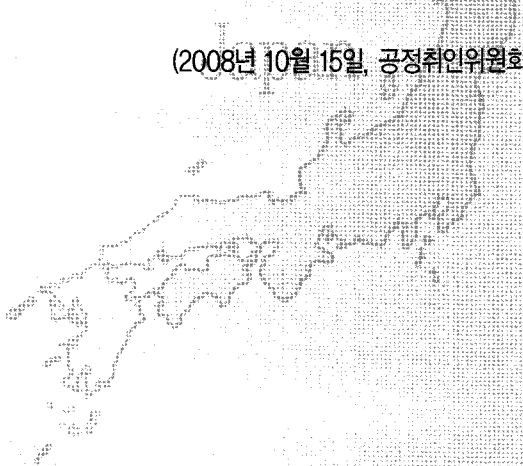
및 '허킹 히터'라는 전자조리기의 구입비용과 설치를 위한 공사비용이 필요하다.

한편, 장기간에 걸쳐 울전화주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기를 새로 구입해 교환해야 하는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이 필요한 것을 고려하면 울전화주택은 연간 최대 약 10만엔, 30년간 약 350만엔 혹은 약 300만엔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다음의 배제조치를 내렸다.

- ① 이와 같은 표시는 실제의 것보다 거래의 상대방에게 현저하게 유리한 것으로 일반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라는 취지를 공시할 것
- ②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고, 이를 임원 및 종업원에게 철저히 주지시킬 것
- ③ 향후 이와 같은 표시를 실시하지 않을 것

(2008년 10월 15일, 공정취인위원회)



●●●● 일본 ●●●●

MS의 OEM 판매계약, 구속조건부거래 심결



공정취인위원회는 피심인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하 'MS')에 대해 2004년 9월 1일 심판개시 결정을 한 후 심판절차를 진행해 왔는데, 2008년 9월 16일 MS에 대해 2005년 법률 제 35호에 의한 개정 전의 독점금지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심결을 했다.

MS는 2003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4년 7월 31일 까지 일본에서 PC의 제조·판매를 영위하는 사업자와 직접 교섭해 MS의 'Windows'라고 하는 명칭을 교부한 PC용 기본 소프트웨어를 OEM 판매하는 것을 허락하기 위한 계약(이하 'OEM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허락을 받은 PC의 제조·판매업자(이하 'OEM 업자')에 대해 OEM 업자가 해당 PC용 기본 소프트웨어에 의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MS 또는 다른 피허락자 등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 등을 약속하는 취지의 조항(이하 '본건 비계쟁 조항')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OEM 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을 붙여서 거래하고 있었다.

또, MS는 2004년 8월 1일 이후의 계약으로부터 본건 비계쟁 조항을 삭제하고 있지만, 2004년 7월 31일까지를 종료시점으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의 본건 비계쟁 조항은 같은 해 8월 이후도 계속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행위는 PC AV 기술 거래시장에 있어서의 공정한 경쟁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공정경쟁 저해성이 인정되어, 부당한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 독점금지법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AV 기술이란, 디지털화된 음성 또는 화상을 시청할 수 있는 기능을 PC상에서 구현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문을 했다.

- ① MS는 당사 제품의 사용(판매 포함)을 허락하기 위한 계약을 일본의 OEM 업자와 체결하면서, 해당 OEM 업자에 대해 본건 비계쟁 조항이 부가된 계약의 체결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피허락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을 붙여 해당 OEM 업자와 거래하고 있었던 행위를 2004년 8월 1일 이후 취소한다는 것을 자사의 업무집행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 ② MS는 향후 출시되는 모든 자사 제품에 대해서 AV 기능과 관련되는 특허권에 관한 범위에 한정해 본건 비계쟁 조항의 장래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를 자사의 업무집행기관에서 결정하고, 그 취지를 해당 OEM 업자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방법에 대해서는, 미리 공정취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MS는 향후 일본의 PC 제조·판매업자에 대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008년 9월 18일, 공정취인위원회)